

의안번호 2696

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2696호, **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1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가.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2021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, 수입계획상 「예치금 회수」 금액이 당초 246백만원에서 905백만원으로 659백만원 증가하였고,

나.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재무활동 「예치금」 금액이 당초 40백만원에서 699백만원으로 659백만원 증가하였음

다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<수입계획>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당초 (A) | 변경 (B) | 증 감 (B-A)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계 | 1,321 | 1,980 | 659 |
| 예탁금회수 | 510 | 510 | - |
| 예치금회수 | 246 | 905 | 659 |
| 이자수입 | 295 | 295 | - |
| 기타수입 | 269 | 269 | - |

<지출계획>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당초 (A) | 변경 (B) | 증 감 (B-A)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계 | 1,321 | 1,980 | 659 |
| 비용자사업 | 1,177 | 1,177 | - |
| 용자성사업 | 100 | 100 | - |
| 기본경비 | 3 | 3 | - |
| 예치금 | 40 | 699 | 659 |

Ⅲ. 검토의견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 6억 5,900만원을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(6억 5,900만원)으로 반영하고, 수입 계획과 연동된 지출계획중 여유자금 예치(6억 5,900만원)에 지출계획 하 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1)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 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 록 정하고 있음
 - 아울러 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 2)에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 치금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%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
 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이 당초보다 1,636.5%, 6억 5,900만원 증액요청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2) 행정안전부, 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('20. 7), p.43, p.302

〈표 3-1〉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지출계획(안)

(단위 : 백만원, %)

| 정책 사업 / 단위 사업 / 세부 사업 | 당 초 (A) |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(B) | 증 감 (C=B-A) | 증 감 륜 (D=C/A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계 | 1,320 | 1,980 | 659 | - |
|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| 1,277 | 1,277 | 1,277 | - |
| 일 반 예 산 (재 무 활 동) | 40 | 699 | 659 | 1,636.5 |
| 보 전 지 출 | 40 | 699 | 659 | 1,636.5 |
| 여 유 자 금 예 치 | 40 | 699 | 659 | 1,636.5 |
| 행 정 운 영 경 비 | 3 | 3 | 3 | - |

※ 백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 것임

자료근거 : 서울특별시, 어르신복지과-15576 ('21. 8. 24) 재구성

- 아울러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'2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지출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의 조성액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으로
 - 동 계정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³⁾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같이 예치후 필요시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3)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 제5조(노인복지계정)

② 노인복지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

1.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
2. 노인단체 지도·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
3.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
4. 노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
5. 노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
6. 저소득노인의 자활 지원
7. 노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
8.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